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김용석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90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4일

발 의 자 : 김용석, 고병국, 문영민,
김상훈, 김평남, 김상진,
신정호, 김제리, 김태호,
이현찬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표결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일부 장애인의 경우 기립표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수표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,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(안 제 43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 단서 중 “기립표결”을 “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으며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3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다만,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<u>기립표결</u>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43조(표결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으며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</u>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